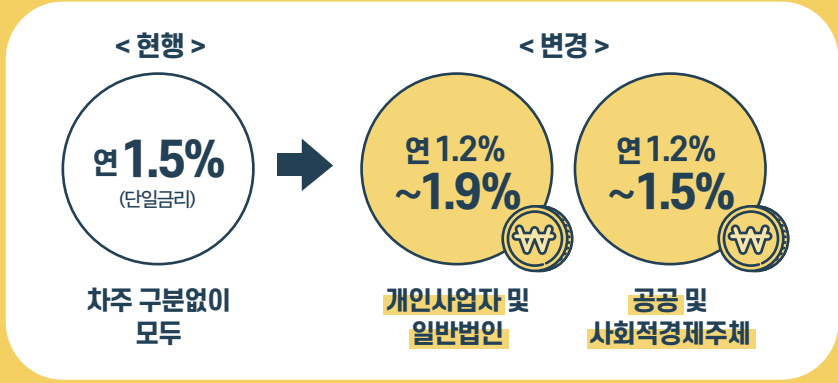


도시재생시أت융자,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
공공성 UP! 투기 NO!

1

차주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
기본융자금리를 차등화합니다



우대유형	인하 수준	적용대상 범위	
		개인사업자 및 일반법인	공공 및 사회적경제주체
사회적경제주체 운영	0.1%p	0	X
사회적약자 고용	0.1%p	0	0
지역공동체 활성화	0.1%p	0	0
공익상품 특화	0.1~0.2%p	0	0
정부정책 연계	0.05~0.2%p	0	0

2

공공성 수준 등에 따른
용자이율 우대조건을 정합니다

3

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은
용자 한도가 제한됩니다

구분	용자한도				
	기본한도	감액한도			
		투기과열지구 외		투기과열지구	
지가변동률 차이	1%p 미만	1.5%p 미만 ~ 1%p 이상	1.5%p 이상	1.5%p 미만	1.5%p 이상
적용 한도	총사업비의 70% <small>(임대상가 조성자금 80%)</small>	총사업비의 60%	총사업비의 50%	총사업비의 40%	용자금지 X

현행 생활SOC 종류

공공보건기관, 노인의료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

주차장, 도서관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

축구장, 야구장, 게이트볼장, 육상경기장, 체육관, 수영장

추가 생활SOC 종류

노인주거복지시설, 종합병원, 온종일돌봄체계

메이커스페이스, 공원, 휴양림, 야영장

상하수도, 도시가스, 우수저류시설

4

생활 SOC 조성자금 용자 상품의
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합니다